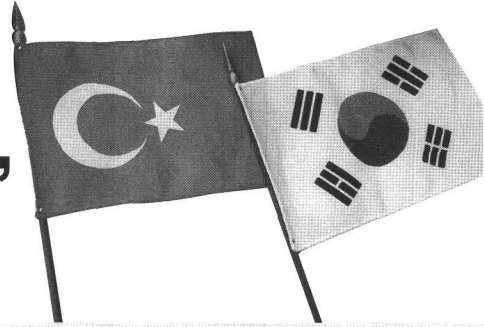


# 민감 농수산물 양허제외, 개방 합의



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양념채소류, 과실류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반면, 대터키 주요 수출품목인 인스턴트커피, 담배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토록 했다.

김진진 농림수산물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

지난 3.26일 한국과 터키 정상간 한-터키 FTA가 타결되었음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발효 중인 FTA 8개를 포함하여 9개 국가 및 경제공동체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터키는 G-20 회원국이자 브릭스(BRICS)에 이은 새로운 신흥시장그룹에 항상 포함되는 국가로 글로벌 금융위기 전 연평균 7%대의 고성장을 이루었고, 인구규모 또한 약 7,500만 명으로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과 아시아, 중동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로서의 의미가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 터키와 농수산물 교역액 0.2% 차지

터키 농업은 양호한 생태조건과 기후를 갖춰 유리한 점이 있으나, 소규모 가족 경영 형태의 영세한 농가가 많고,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 등 농업선진국처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터키와 농수산물 교역액은 2011년 기준 69백만불(수입 54백만불, 수출 15백만불)로 우리나라 전체 농수산물 교역액의 0.2%를 차지해 교역액이 많지 않으며, 주요 수입 품목도 잎담배, 올리브유, 헤이즐넛 등 우리나라 생산이 없어 수입이 필요한 품목이다.

우리는 앞서 언급한 지정학적 중요성, 시장잠재력, 거대시장 진출 교두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농어업분야 등 비교 열위에 있는 산업의 피해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0년 3월 한-터키 FTA 협상을 개시하였



고 4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2012년 3월 26일 타결되었다.

협상 당시, 한국과 터키 양측 모두 농어업이 민감하다는 사실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부분의 민감 농수산물에 양허제외하는 등 낮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품, 양념채소류, 과일류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반면, 대터키 주요 수출품목인 인스턴트 커피, 담배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철폐토록 하였다.

또한,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터키산 원산지 기준에 대해서는 화훼, 과채, 곡물류는 터키에서 재배, 수확된 경우, 육류는 터키에서 출생, 사육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하여 제3국산 농산물이 우회 수입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우리나라 가공 농산물 중 설탕과자, 비스킷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경우, 제3국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특혜관세가 적용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 ‘고려’ 명칭 한국산에만 터키 자국법 명시

마지막으로, 고려홍삼, 고려백삼에 대해 ‘고려’라는 지리적 명칭을 한국산 제품에만 붙일 수 있도록 그 권리를 터키 자국법에 명시토록 하였다.

이상의 협상결과를 고려해 볼 때, 농수산물의 교역이 적고,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에 국내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한-터키 FTA로 인해 대터키 주요 수출품인 커피, 담배 등의 터키측 관세가 없어져 수출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터키로 수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라면, 소주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없어질 예정이다므로 이에 대한 수출 또한 기대된다.

한-터키 FTA에서 농수산분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하면서도 양국의 관심사항을 반영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향후 다른 FTA에 대해서도 한-터키 FTA 사례를 모델로 삼아 농수산분야에서도 윈윈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㉞